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038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 박대출 · 윤한홍 · 김기현

강민국 · 김태호 · 김정재

신성범 • 윤영석 • 송언석

강승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남과 울산은 지방법원 설치 지역임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았고, 인구 300만 이상 시도 중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경남이 유일함.

또 부산권역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중도 인구 대비 불균형하게 낮아, 학령인구인 20대 수도권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남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「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광역지방자치 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하여,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 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 ·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	제7조(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
원) ① ~ ③ (생 략)	원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
	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
	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
	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
	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
	<u>한다.</u>